

-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 (가정, 시설 등)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(신체·정서 등)을 확인하고,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*를 지원할 계획이다.

* 드림스타트 연계, 복지급여 신청, 생필품 지원 등

-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됨을 고려하여, 가정 내 아동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
- 담당 공무원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·안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.

-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“만 3세 아동을 양육 중인 가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방문조사가 다소 번거롭더라도, 이번 전수조사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전했다.

-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“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여 학대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적극적인 아동 보호조치를 실시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- “보건복지부-경찰청-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‘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1. 「만 3세 아동 소재·안전 전수조사」 개요

< 별첨 > 1. 「만 3세 아동 소재·안전 전수조사」 홍보포스터

2. 「만 3세 아동 소재·안전 전수조사」 홍보리플렛

붙임

「만 3세 아동 소재·안전 전수조사」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현재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연 1회 전수조사 중
 - 유아 단계(만3세)부터 동일년도 출생 아동에 대한 일괄 점검을 실시하여, 더욱 면밀하게 아동 안전을 확보할 필요

◆ 만3세 선정이유 : 만3세는 「유아교육법」상 '영아'→'유아'로 전환되면서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(유치원·어린이집)로 본격 진입하고,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

※ (법적근거) 사회복지급여법 제12조, 제12조의2 및 아동복지법 제66조

□ 조사 대상 및 기간

- (대상) '16년 출생아동 총 41만2,319명(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) 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·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은 3만4,819명(9.25일 기준)

< 2016년 출생 아동 현황 >

출생 아동	유치원 재원 아동	어린이집 재원 아동	해외 체류 아동	방문대상 아동
412,319명(100%)	148,709명(36.1%)	218,720명(53.0%)	10,071명(2.4%)	34,819명(8.4%)

- '16년 출생 아동 중 유치원/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, 가정 내 양육 중(양육수당 수령가구 등)인 국내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확인
- 해외출국 아동은 '21년 한 해 동안 분기별로 입국여부를 확인하여 입국 시 거주지 방문조사

- (기간) '20.10월~12월(총 3개월)

□ 조사 담당자 및 방법

- (방문조사) 읍면동 공무원이 점검대상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조사



- 읍면동 아동 담당자와 복지 담당자가 협업하여 조사 진행

- (경찰수사) 읍면동 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, 읍면동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·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

□ 조사 내용

◆ 아동의 소재· 안전을 확인하고
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

- (소재·안전) △주민등록 상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 △아동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
→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즉시 신고

- (양육환경)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* 필요 여부 확인· 지원

* 드림스타트 연계, 복지급여 신청, 생필품 지원 등

□ 조사 수행체계

